

보도 일시	2022. 4. 13.(수) 09:00 2022. 4. 13.(수) 석간	배포 일시	2022. 4. 13.(수) 09:00
담당 부서 <총괄>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이철호 (044-202-8904)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 13일, 시멘트 제조사업장 포함 1,500여 개소 일제 점검 -

- 7,300여 개 고위험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예정
- 오전 2시간(9~11시), 오후 2시간(13~15시) 산재 사망사고 다발, 점검 필요
- 지난 3월 16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충분히 활용하고 경영책임자 솔선수범 당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4.13.) ‘현장점검의 날’ 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시멘트 제조업종의 연속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친환경 설비 개조 등에 따른 위험 요소 증가로 전국 250여 개소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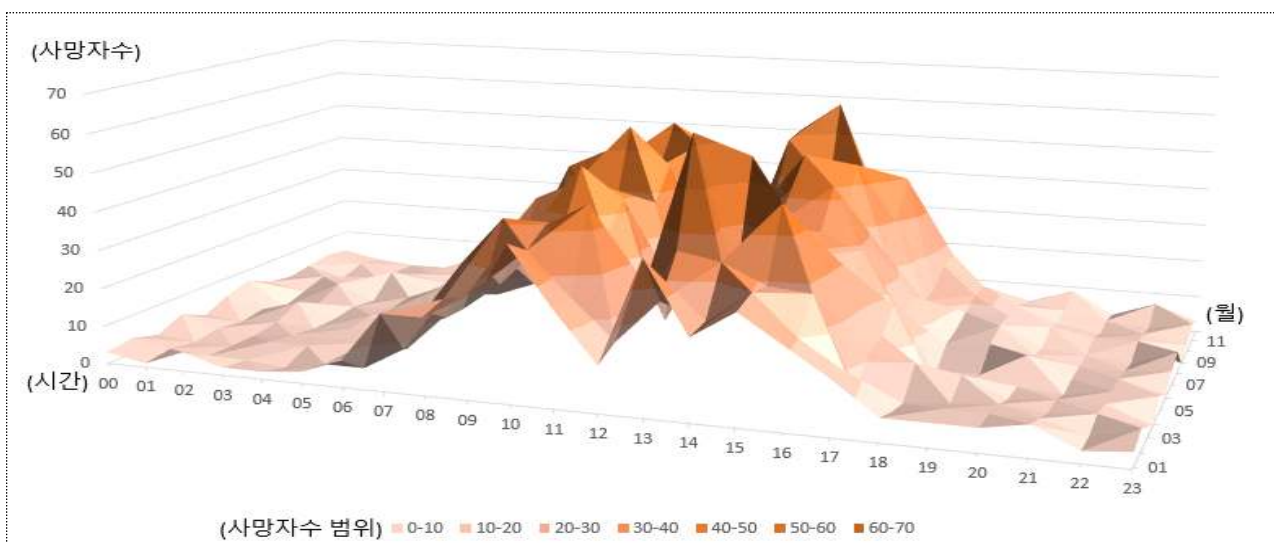
- * ▲(대상) 건설업(현장), 채석장, 석제품 또는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점검반) 2인 1조
▲(내용)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① 추락 예방조치, ②끼임 예방조치, ③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조치) 적발된 사업장은 ①시정지시 또는 ②불시감독(불량사업장에 한함)

□ 또한, 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문서를 일괄 발송(4.11.)했다. (붙임1 참조: 내용 일부)

*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취약(산재 발생) 및 위험 요소(위험 기계·기구, 설비, 장소 보유 등) 다수

- 앞으로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이행현황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2시간(9시~11시), 오후 2시간(1시~3시)의 시간대에서 전체 중대재해 중 40.9%(4,500명 중 1,839명)가 발생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붙임2 참조)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간대별 추이]



- “경영책임자는 이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자의 촘촘한 안전 순찰과 작업 시작 전 안전 확인·점검의 실천력을 높여 이행하여야만 만약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4월과 5월에 발생한 중대재해 유형을 최근 5년간 현황을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업은 추락(53.2%), 제조업은 끼임(33.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 추락) 406명 중 216명: 53.2%, (제조업 끼임) 180명 중 61명(33.3%)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에 발생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고사례]

- (추락) 지게차 유도작업 중 작업구간 내 개구부(높이 약 3미터)로 추락하여 사망 →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 (끼임) 사출성형기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동료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설비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 정비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 조치 미실시

- “지난 3월 16일 배포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료 내려받기)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

-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동 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영책임자의 진심 어린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붙임 1.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2. 최근 5년간(2017~2021년) 사망사고 현황 분석

담당 부서 <총괄>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이철 호 (044-202-8904)
<공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본부 사업총괄부	책임자	부 장	유영수 (052-703-0611)
		담당자	차 장	김해현 (052-703-0614)

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4가지)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는 ❶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❷ 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며, ❹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②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해야할 일(4가지)

- ① 본사 전담조직(전담조직 없는 경우 전담자 등)을 통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 사업장을 스스로 감독하는 것처럼 수시로 불시에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탁한 경우는 위탁기관에서도 동일하게 현장을 관리토록 경영책임자는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보고받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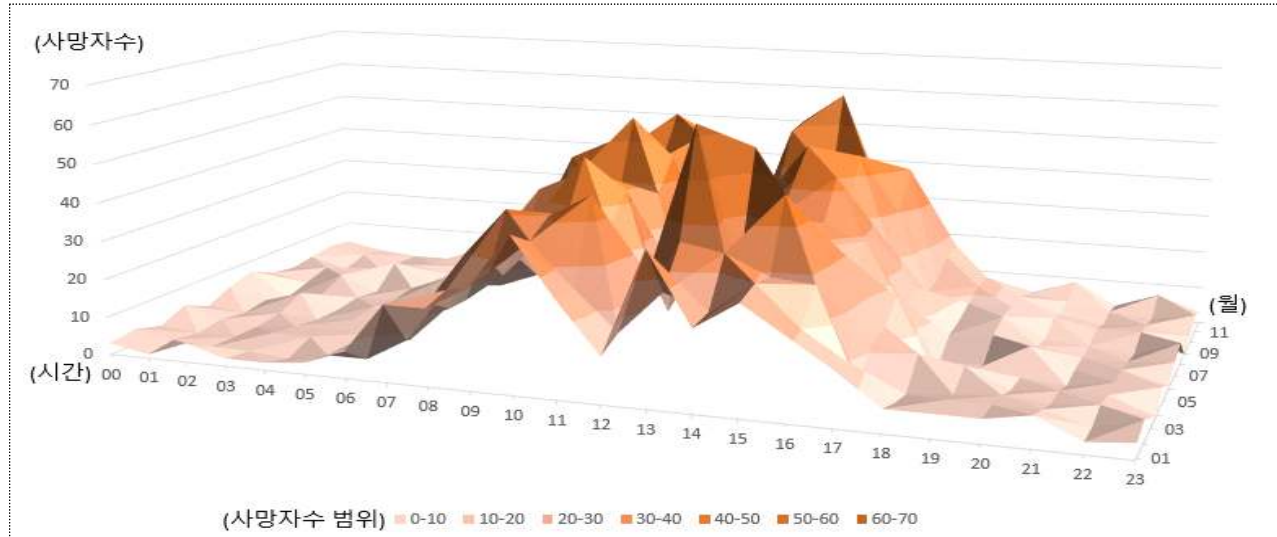
- ②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보고·확인되면 법 준수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해야 합니다.
- ③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부여하여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④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조직이나 전담자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반드시 해당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고받아 확인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의 특성, 규모에 따라 1~2주 또는 1개월에 1회 이상 등 수시로 점검

붙임2

최근 5년간(2017~2021년) 사망사고 현황 분석

□ 전체 업종 사망사고 발생 시간대 (공식통계)



구 분	계	1~3시	3~5시	5~7시	7~9시	9~11시	11~13시	13~15시	15~17시	17~19시	19~21시	21~23시	23~1시
사망자수	4,500	50	55	90	534	933	631	906	740	237	143	95	86
비율(%)	100.0	1.1	1.2	2.0	11.9	20.7	14.0	20.1	16.4	5.3	3.2	2.1	1.9

□ 건설·제조업의 4~5월 사망사고 발생유형 (공식통계)

구 분	건설업			제조업		
	계	4월	5월	계	4월	5월
계	406	203	203	180	90	90
떨어짐	216	100	116	25	13	12
화재	41	38	3	8	4	4
부딪힘	33	14	19	17	7	10
물체에 맞음	31	16	15	10	5	5
무너짐	28	8	20	6	3	3
깔림·뒤집힘	23	10	13	20	12	8
끼임	11	6	5	61	33	28
폭발·파열	5	2	3	10	2	8
감전	4	2	2	6	3	3
넘어짐	4	2	2	2	-	2
화학물질누출	4	4	-	4	-	4
빠짐·익사	3	1	2	1	1	-
절단·베임·찢림	2	-	2	1	-	1
산소결핍	1	-	1	3	3	-
사업장내교통사고	-	-	-	3	2	1
기타	-	-	-	1	1	-
분류불능	-	-	-	2	1	1

※ 건설업의 4월 화재 사망사고(38명)는 이천지역 물류센터 사고